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53
------	-----

2009. 02. 1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30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2월 16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소관 업무 변동사항과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

가. 기금관리 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 변경(안 제7조, 제9조)

- 이 사항은 2008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 관리 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 기존에 기금운용관이던 “산업국장”을 “경제진흥관”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이던 “생활경제과장”을 “기업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고,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산업국장”에서 “경제진흥관”으로, 위원 가운데 “산업지원과장” 및 “생활경제과장”을 각각 “기업지원담당관”과 “생활경제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행정기구의 변경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나. 기금 우선 용자대상 범위의 확대(안 제11조)

- 안 제11조제2항제2호는 기금의 우선 용자 대상자의 범위를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임.
- 이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개발진흥지구의 종류에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¹⁾.
- 이상과 같이 관련 조례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산업개발진흥지구 외에 특정개발진흥지구까지 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임.

다. 조문의 정비

- 법제처가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례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 수요자들의 법령 해석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1)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